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 고용지원 근거 마련〉

■ 임종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753호)

2025. 9.

국 방 위 원 회
전문위원 서 덕 교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방산업체 기술보호 역량 지원 강화방안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2025. 3. 10.
3. 회부연월일: 2025. 3.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보호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의2(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 등)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을 고용한 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한정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현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¹⁾에 따르면, 정부는 대상기관²⁾이

1)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산업기술”이란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하여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서 방위사업청장이 제7조에 따라 지정하고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대상기관”이란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하거나 방위산업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등을 이행함에 있어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체계 구축·운영 자문 및 비용지원, 전문인력 양성지원,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음.

또한, 2024년 12월 신설(시행 2025.6.4.)된 법 제13조³⁾에서는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 하도록 하였는데,

이 보호체계에는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외에도 제13조의2⁴⁾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을 제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제16조의2에서는 ‘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있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사업청·각군·국방기술품질원·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다. 그 밖에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 및 대학 등

3)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대상기관의 장은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포함한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방위산업기술을 취급하는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3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침의 제정 등)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절차 등에 관한 지침(이하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전문가,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하여야 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지침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대상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3.][시행일: 2025. 6. 4.] 제13조의2

전담기관'이 신설되는 등 방위사업청이나 방산업체 등에 방위산업 기술보호 의무를 강화하고 있음.⁵⁾

[방위산업기술보호 관련 최근 주요 개정사항]

해당 조문	주요 개정내용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구체화 (제13조제1항)	대상기관에 방산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의무 부과 1. 보호구역의 설정·출입허가 또는 출입 시 휴대품 검사 2. 방산기술 취급 전문인력의 이직 관리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계약 체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방산기술 보호지침 제정 근거 신설 (제13조의2)	방사청장은 방산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지침을 정하여야 함
방산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 신설 (제16조의2)	방사청장은 방산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방사청 출연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6조의2(방위산업기술 보호지원 전담기관)①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방위사업청 출연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상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위협 모니터링 업무 지원
2. 대상기관에 대한 기술 유출 및 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원인분석 업무 지원
3. 대상기관에 대한 사이버 취약점 점검 업무 지원
4. 종합계획 수립·시행 업무 지원
5. 시행계획 수립·시행 업무 지원
6.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지정·변경·해제 및 관정 업무 지원
7.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 업무 지원
8. 방위산업물자, 국방과학기술, 전략물자의 보호와 수출입에 대한 교육 업무 지원
9.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른 전략물자의 수출허가 업무 지원
10. 그 밖에 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 12. 3.] [시행일: 2025. 6. 4.]

해당 조문	주요 개정내용
방산기술 유출 현황 등 국회보고 신설 (제18조의2)	방사청장은 방산기술 외국 유출·침해 현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소관 상임위에 보고
처벌 조항 강화 (제21조)	방산기술 외국 사용 목적 유출 및 반환·삭제 거부: 1년 이상 유기징역 및 20억원 이하 벌금 병과 방산기술 국내 사용 목적 유출 및 반환·삭제 거부: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한편, 「방위사업법」에 따른 예산사업으로 ‘방산기술보호사업’⁶⁾이 있는데, 2024년도에는 방산기술보호 실태조사, 방산기술보호 지원 사업 등의 내역사업으로 43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도 예산은 65억 3,9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

6) 방산기술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며 국제조약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아래의 6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됨.

- (방위산업기술보호 실태조사) 방산업체, 정부출연기관 등 방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시정명령, 과태료 등 후속조치 실시
- (방위산업기술보호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기술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 방산 관련 업체 대상 사이버보안취약점 진단, 정부-업체-정출연 간 방산메일시스템 공통암호화체계 구축 등
- (방위산업기술보호 운영)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문비, 방위산업기술보호 유공자 포상금 및 방위산업기술보호 CEO 간담회 개최
- (방위산업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 방산기술보호 및 수출통제 전문가와 방산협력업체 대상국과의 교류를 위한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 격년제 개최
-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 방산기술 보유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방산기술보호 제도 및 필요성, 분야별 보호방법 등을 교육
- (방산수출허가 제도) 「대외무역법」, 「방위사업법」에 따른 군용전략물자, 방산물자 수출허가 업무 수행 및 제도홍보, 군용물자 목록 개정 추진

[2024년도 방산기술보호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4년	2025년
	집행액	예산액
· 방산기술보호실태조사	82	85
· 방산기술보호 지원	3,622	6,068
· 방산기술보호 운영	34	22
· 방산기술보호 국제컨퍼런스	204	0
· 방산기술보호 교육	214	224
· 방산수출허가제도	152	140
합 계	4,308	6,539

* 자료: 2024년도 방위사업청소관 결산설명자료(방위사업청) 재구성

□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산기술 보호를 위하여 각종 의무가 법률에 신설되고, 예산도 증액되는 상황으로 그 만큼 방산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특히 방산분야 주요 사이버 공격 대상이 주요방산업체에서 일반 방산업체로 확대됨에 따라 방산업체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임.

[2020년 ~ 2024년 방산업체 규모별 신고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합 계	12	28	15	7	24	86
주요방산업체 (정출연 포함)	9	17	4	3	4	37
일반방산업체	3	11	11	4	20	49

* 자료: 2020년 4월부터 국방기술품질원에 방산기술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방산기술 유출·침해 신고 대응 중임(방위사업청)

□ 그러나 다수의 중소 방산업체의 경우 여전히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있음.

□ 방위사업청은 앞의 ‘방산기술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방산업체 대상 사이버보안 취약점 진단사업’,⁷⁾ ‘방위산업기술 보호 체계 구축 지원사업’⁸⁾ 등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직접적인 고용지원 사업은 없는 실정에서 방산기술보호 전문인력의 고용을 지원하는 개정안은 중소·중견의 기술 보호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⁹⁾

방위사업청은 동 개정안에 따른 전문인력 고용지원 사업 예산안을 2027년도부터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임.

7) 방산업체 및 일반협력업체 정보시스템에 대한 모의해킹 및 취약점 진단을 통해 사이버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8) 방산 중소·중견기업 및 그 협력업체의 기술 보호수준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사업’과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구성

9)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2024년도 총 41번 개최한 ‘찾아가는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 상당수가 인건비 지원을 희망함.

[방산 정보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사업(안)]

(지원대상) 방산 중소·중견기업 및 일반협력업체

(지원분야) 정보보호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인력 정규직 채용

(지원내용)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이내(2천만원
한도) 지원

(소요예산) 36억 예상

(지원분야) 5년 ('27년~'31년, 사업중 효과성을 분석·검토하여 계속
시행 여부 판단)

* 자료: 방위사업청 제공 자료 재구성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고용을 위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비용 보조 등의 지원을 하게 되는데,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배분 측면을 고려할 때 「방위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과 관리를 받는 방산업체¹⁰⁾에 국한되는 것이

-
- 10)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①방산물자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과 보안요건 등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방산업체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방산업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산업체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주요방산업체로, 그 외의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를 일반방산업체로 지정한다.
1. 총포류 그 밖의 화력장비
 2. 유도무기
 3. 항공기
 4. 함정
 5. 탄약
 6. 전차·장갑차 그 밖의 전투기동장비
 7. 레이더·피아식별기 그 밖의 통신·전자장비
 8. 야간투시경 그 밖의 광학·열상장비
 9. 전투공병장비 10. 화생방장비 11. 지휘 및 통제장비
 12.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군사전략 또는 전술 운용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물자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적정
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¹¹⁾

[방산업체 지정현황(84개)]

주요방산업체(67개)	일반방산업체(17개)
기아(주), 한화오션(주), (주)대한항공, 두산에너빌리티(주), (주)세아 항공방산소재, 코오롱스페이스웍스(주), 한국항공우주산업(주), 한화시스템(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현대로템(주), 현대위 아(주), 현대트랜시스(주), 효성중공업(주), HD현대인프라코어(주), HD현대중공업(주), LS엠트론(주), SG생활안전(주), SK오션플랜 트(주), (주)강남, 대양전기공업(주), 두원중공업(주), (주)MNC솔루 션, 퍼스텍(주), 평화산업(주), (주)풍산, (주)풍산FNS, 한국특수전 지(주), (주)스페이스프로, 한일단조공업(주), (주)한컴라이프케어, (주)휴니드테크놀러지스, (주)HJ중공업, LIG넥스원(주), SNT모 티브(주), SNT다이내믹스(주), STX엔진(주), 다산기공(주), (주)다 원프릭션, 단암시스템즈(주), (주)대영에스텍, 덕산넵코어스(주), (주)테크카본, (주)동인광학, (주)비츠로밀텍, (주)빅텍, (주)삼양정 밀화학, (주)삼양컴텍, 삼양화학공업(주), (주)삼정터빈(주), (주)삼주 기업, (주)시공사, (주)세트렉아이, (주)씨앤지, (주)아이팩, (주)에이 치케이씨, 연합정밀(주), (주)우경광학, (주)우리별, (주)유텍, (주)이 오시스템, (주)지티앤비, (주)캐스, (주)코리아디펜스인더스트리, (주)현대제이콤, SG솔루션(주), (주)삼정티비엠, (주)에비오시스템 크놀러지스	(주)진영정기, 고려화 공(주), (주)동양정공, (주) 광림, 신정개발특장차 (주), (주)성진테크윈, (주) 유아이헬리콥터, 화 인정밀(주), (주)스펙코, 삼영이앤씨(주), 아이 쓰리시스템(주), 인소팩 (주), 이화전기공업(주), (주)미래엠텍, (주)티에 스텍, (주)대명, 대신금 속(주)

11) 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은 방산기술을 보유하거나 연구개발 중이 아닌 일반업체는 「방산기
술보호법」 상 기술보호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방산 공급망 내에서 사이버 공격자의 경유지
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급망 단위의 기술보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민감기술 보유 현황, 기술 유출 사례, 기술 보호 필요성, 전문인력 채용 수요 등 기업의 기술 보호 전문인력 지원 필요성에 관한 명확한 실태조사를 선행할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적절한 예산을 편성·지원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하여 국방부는 방산기술 유출·침해 예방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중견 방산업체는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기술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인력 구성이 어려운 상황인 점에 공감하며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함.

이에 반하여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비용 지원’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행법 제14조 등¹²⁾으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 법 개정 실익이 크지 않아 부동의하는 입장임.

1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정부는 대상기관이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개선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함에 있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 내용과 지원 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비용지원
 -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수준 및 보안 취약점 등의 진단·자문
 - 나.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적합한 보안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
2.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문인력 양성지원
 - 가. 방위산업기술보호 교육과정 개설 및 교육자료 제공
 - 나. 전문강사 파견 및 교육 전문인력 양성
3.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의 지원
 -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의 조사·개발, 평가·실용연구화 및 보급·확산
 - 나. 네트워크·시스템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술 유출 또는 침해 발생 시 그 원인 분석 및 대응지원
4. 그 밖에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침해 복구 등 대상기관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문 의 처
02)6788-5312

※ 참고자료: 방산업체 기술보호 역량 지원 강화방안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확대) 중소·중견기업 대상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예산 확대 추진
 - * 신청기업/지원기업수(예산) : '22년 17/10(8.0억) → '23년 22/10(7.12억) → '24년 29/10(7.12억)
 - ** '25 예산은 8.02억원(전년비 0.9억 증액)으로서 약 12개社 지원 가능한 규모이나, 매해 수요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지속적인 증액 필요
- (고용지원 사업 도입) 중소·중견기업이 정보보호 전문인력 고용 시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근거 마련 추진

【방산 정보보호 전문인력 고용지원사업(안)】

- ▶ (지원대상) 방산 중소·중견기업 및 일반협력업체
- ▶ (지원분야) 정보보호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인력 정규직 채용
- ▶ (지원내용) 기업별 1명,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이내(2천만원限) 지원
- ▶ (소요예산) 36억 예상
- ▶ (지원분야) 5년 ('27년~'31년, 사업중 효과성을 분석·검토하여 계속 시행여부 판단)

* 자료: 방위사업청